

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10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6. 10.
- 다. 상 정 일 자 : 96. 10. (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 병 임
- 나. 제안이유

-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지관리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됨에 따라 지적관리업무 기능보강 인력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조례 개정

#### 다. 주요내용

- 군본청정원 242명 → 243명(건축7급+지적7급, 1명중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 재 휴)

-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 토지관리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함에 따라 지적관리 업무 기능보강 인력정원승인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### 5. 토론요지

"생 략"

### 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### 7. 첨 부 :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10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됨에 따라 담당인력 지방 건축 7급 + 지적7급 1명 정원 승인  
[자치 12200-1550 ('96. 9. 13)]

## 2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- 자치 12200-1550 ('96. 9. 13)호로 지적관리 기능 보강 정원 승인

## 3. 주요골자

- 군 분청란
  - 지적과에 지방건축7급 + 지방지적7급 1명을 증한다.

##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 본 청 : 243명
2. 의회사무과 : 18명
3. 직 속 기 관 : 114명
4. 사 업 소 : 27명
5. 읍 · 면 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.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 (정원의 총수)		제2조 (정원의 총수)		
1. 군 본 청 : <u>242명</u>		1. 군 본 청 : <u>243명</u>		
2. 의회사무과 : 18명		2. (현행과 같음)		
3. 직 속 기 관 : 114명		3. (현행과 같음)		
4. 사 업 소 : 27명		4. (현행과 같음)		
5. 읍 · 면 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15명		5. (현행과 같음)		